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시행 공고

1. 프로그램 목표

우리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경험을 통한 개인 능력을 향상시켜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프로그램 내용

가. 실습기간

- 1) 기간: 2026. 3. 1.(일)~ 6. 30.(화), 총 16주(또는 4개월)
- 2) 시작일 기준, 기본 16주로 진행하여야 하나, 기업의 환경이나 요구에 따라 4개월로 운영 가능
- 3) 단, 4개월 운영의 경우 운영 종료일은 최대 2026.07.02.까지로 함

나. 실습시간: 주 40시간

다. 실습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3학년 1학기부터 참여)

※ 학기초과/휴학/유예/수료생, 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해외 포함) 기참여 학생 지원 불가

라. 신청기간: 2026. 1. 21.(수)~2. 20.(금) 17:00

마. 선발방법

- 1) 학과(전공)별 실습생 실습기업 매칭&선발 후
- 2)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운영 계획서, 협약서를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 2. 20.(금)까지 제출해야함
- 3) 실습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최종 선발

바. 운영구분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 초과인 경우
지원금 지급	실습기관이 기업지원금(75%)에 학교지원금(25%)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 학생에게 직접 지급. 대학은 학교지원금(25%)을 실습기관에 환급.	실습기관은 기업지원금(실습 비율에 따라 기업별 지원 금액 상이)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대학은 학교지원금(최저임금의 25%)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단 예시 참조)

※ 현장실습학기제는 반드시 직무 관련 교육과 실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지원금 상이

※ 기업지원금: 금액 및 지급 시기는 기업별 내규에 따름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학교지원금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

사. 지원금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간	교육시간	실습시간	월 기업지원금	비고
4개월	25%	75%	2,156,880원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지원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고, 대학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25%를 학교지원금으로 기업에 환급
16주	25%	75%	1,981,440원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교육시간	실습시간	지원금		비고
			월 기업지원금	학교지원금 총액	
4개월	30%	70%	1,509,816원	2,156,880원	실습기관이 기업지원금(기업 별로 상이)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학교지원금 총액(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25%)은 대학이 학생에게 지급
	40%	60%	1,294,128원	2,156,880원	
	50%	50%	1,078,440원	2,156,880원	
	60%	40%	862,752원	2,156,880원	
	75%	25%	539,220원	2,156,880원	
16주	30%	70%	1,387,008원	1,981,440원	
	40%	60%	1,188,864원	1,981,440원	
	50%	50%	990,720원	1,981,440원	
	60%	40%	792,576원	1,981,440원	
	75%	25%	495,360원	1,981,440원	

아. 학점인정: 「학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및 제36조」,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의거, **전공선택 15학점** 인정 (다전공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2, 3전공, 융합전공 인정 가능, 연계/심화전공 학점 인정 불가)

3. 세부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26. 1. 21.(수)~2. 20.(금)	실습기관 섭외, 실습생 추천	학과(전공)
	3자 협약(기관, 학생, 학교)체결	기관, 학생(실습생), 학교
	학과(전공)별 참가 신청서 접수	접수처: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2026. 2. 25.(수, 예정)	실습 전 선발학생 사전직무교육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시행 (On-line 교육)
2026. 3. 1.(일)~6. 30.(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16주 또는 4개월)	운영중간점검서, 출석부, 종합보고서 등 (학생 작성)
	실습기관 현장지도 점검	지도교수 작성(실습기간 내 1회)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학생설문조사서, 학생종합보고서 작성	실습기관, 학생(실습생) 제출처: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2026. 7.	학점인정 및 학교지원금 지급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교무팀

4. 실습생 지원자격

- 가. 4학기 이상 이수한 우리대학교 재학생
- 나. 개인 인턴 중이 아닌 학생(개인 인턴 학점인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다. 현재 미취업상태(과거 직장 고용경력은 무관)
- 라. 성실한 실습 진행이 가능한 학생
- 마. 본 공지의 내용을 정독하여 숙지한 학생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 실습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 하는 경우
- (실습 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 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학점인정 불가

5.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실습기관 참가 자격

- 가. 실습기관 자격 및 요건

- 1)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
-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관
- 3) 실습기관은 다음 각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실습기관)」 근거
 - 가) 현장실습 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다) 현장실습 학기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라)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4) 현장실습 학기제 운용 및 학생 지도, 관리를 담당할 현장 교육 담당자를 배치할 것
- 5) 그 밖에 이 고시를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나. 실습기관은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함

- 1) 실습기관은 실습생(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정의 교육시간을 배정해 실습기관 교육을 운영해야 함
- 2) 교육 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함
- 3)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의 비율이 10/100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배정해 운영해야 하고, 교육 시간과 실습 시간 비율을 기관 참여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4) 배정된 교육 시간 동안은 필수적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 시간에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함
- 5) 세부 교육 내용은 붙임의 실습기관 운영계획서에 입력하여 제출해야 함

다. 실습기관 불인정 기준

- 1)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및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사업
- 2)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관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 3) 사업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4) 소비 향락업체, 외근직 보험영업, 다단계 판매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단순 용역업체(경비, 건물관리, 청소, 주차 등), 상습 임금체불사업장은 참가 불가

6. 실습기관 교육 운영

가.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정의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실습기관 교육을 운영해야 함

나.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교육시간 및 실습시간 비율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에 기입 요망 (7. 지원금, '마. 예시' 참고)

라. **배정된 교육 시간은 필수적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 시간에 실습 진행 불가**

마. 세부 교육내용은 붙임 2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에 입력하여 제출

7. 지원금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이 기업지원금(75%)에 학교지원금(25%)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 학생에게 지급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 선 지급 후, 학교에서 기업에 최저임금의 25% 금액을 환급함)

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지원금(기업별로 상이)은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대학은 학교 지원금(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25%)을 학생에게 지급

다. 기업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하여 신청서에 지급액 반드시 작성

라. 기업지원금 지급기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 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실습시간=전체시간-교육시간)**

8. 프로그램 관련 실습기관 의무사항

- 가. 학생 산재보험 가입 후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담당자에게 e-메일로 송부
- 나. 실습 종료 시 학점인정 관련 서류 실습기업 현장실습 담당자 확인 후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 제출

9. 신청방법

- 가. 현장실습 참여 희망 학생 “붙임 1번” 서류 작성 후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 ※ 신청서 접수 이전 우리대학교 취업진로지원팀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 요망
(SM challenge e-포트폴리오를 통한 사전 신청 필수)
 - 상담 신청 바로 가기 주소 (<https://smcareer.smu.ac.kr/main.asp>)
 - 홈페이지 상단 상명인 → e-포트폴리오에 로그인(학번/비번) 후 → 상단 메뉴 중 상담신청 클릭 → 컨설턴트 상담 → 단과대 담당 컨설턴트 선택 → 첨부파일에 현장실습 자기소개서 첨부 → 상담 완료 후 현장실습 신청
- 나. 전공(학과)사무실에서 “붙임 1” 및 “붙임 2(평가표 제외)” 서류 수합 후 확인하여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 제출(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반드시 제출)

10. 학점인정

- 가.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종합보고서, 만족도조사** 등을 근거하여 전공선택 인정
(※ 2전공 학점인정을 받는 학생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필히 기재 - 미기재 시 자동 1전공 인정, 2전공은 다전공일 경우 가능, 융합전공 인정 가능, 연계/심화 학점인정 불가)
- 나. 성적평가: P(급제)/F(낙제)로 표시, 학점 수만 반영하며 평점 평균 산출에서 제외함.
- 다. 중도해지자 성적처리
 - 1) 실습생 본인의 귀책 사유(중도포기, 결근, 지각 등)로 인한 해지의 경우: "F" 처리
 - 2) 기업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실습기업 재배치

11. 실습생 준수사항

- 가. 실습기업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함.
- 나. **사전 직무 교육에 반드시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실습 자격을 박탈함.
- 다.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학생의 실습 진행 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 라. 학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함.
- 마. 수강신청
 - 1)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 후 1학기 수강 신청은 정상적으로 신청함
 - 2) 현장실습학기제 선발자는 첫 출근 후 최종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의사가 있을 시 수강신청 정기간 내에 근무시간 이외에 수강 가능한 e-캠퍼스 온라인교과목을 제외한 수강 교과목 삭제함
 - 3)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서 교무팀으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청함
- 바.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점인정 관련 서류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 제출함.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 및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향후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타 프로그램 참가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 아. **실습을 완료하여도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음.**
(반드시 해당 사항 엄수)

-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각 1부
2. 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 관련 서류 각 1부
3. 현장실습학기제 지도점검표 양식 1부. 끝.

2026. 1. 21.

대 학 일 자 리 본 부 장